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번 호	739
-------------	-----

발의연월일 : 2011. 8.
발의 의원 : 김기석 의원(대표발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안 제2조제2항)

- 7일 이내 → 9일 이내

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안 제9조의5제1항)

-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u>7일 이내</u>로 실시 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9일 이내</u>----- ----- -----.</p>
<p>제9조의5(과태료 부과 징수) ①</p> <p>제9조의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u>정당</u> <u>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u> <u>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u> <u>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이</u> <u>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p>제9조의5(과태료 부과 징수) ①</p> <p>----- ----- <u>정당한 이유없이</u> <u>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u> <u>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이유없</u> <u>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u> <u>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u> ----- -----.</p>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